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충청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
의 정 토 론 회

일 시 | 2024. 5. 29.(수) 14:00

장 소 | 태안문화원 공연장(2층)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좌 장 | 정광섭 의원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남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

의 정 토 론 회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4. 5. 29.(수) 14:00 ~
- 장 소 : 태안문화원 공연장(2층)
- 주 제 :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

□ 세부계획(안)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13:50	14:00	10'	○ 안내 및 명부 작성	출입명부 작성 등
14:00	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임지열 수석전문위원
14:05	14:20	15'	○ 내빈소개 및 개회사	정광섭 의원
14:20	14:30	10'	○ 축사	성일종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영상)
14:30	14:35	5'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14:35	14:55	20'	○ 주제발표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충남도의회)
자리 정돈 후 토론회 진행 ※ 좌장: 정광섭 의원				
14:55	15:55	60'	○ 지정토론(6명)	토론자 전체(각 10분)
15:55	16:55	60'	○ 종합토론 및 자유토론	토론회 참여자 전체
16:55	17:00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정광섭 의원

개 회 사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장 정광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정토론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태안문화원에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효율적 정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도민 여러분과 관계자들을 모시고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토론회는 어업인의 생계를 지키면서 도민이 해양레저를 안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충남의 수산 분야 종사 인구는 6,435가구 1만 2,694명으로 도내 인구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어가인구 9만 805명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 경남에 이어 전국 3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 연안 중 우리 충남은 가장 탁도가 좋은 청정해역으로 바지락, 낙지, 꽃게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1,209km의 리아스식 해안선과 339km²의 광활한 갯벌, 286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어 해양관광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매년 해양 레저인구의 증가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체험 어장이 아닌 마을 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 어업인의 주 소득 원인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함으로써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족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어족자원 보호 그리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간의 상생을 위하여 성일종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수산자원 관리법」을 개정하였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충청남도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과의 상생을 위한 효율적인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구체화 되길 기대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에도 흔쾌히 발제를 맡아주신 김현진 담당관님과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여섯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의회 정 광 섭 의원

■■■■■■ **목 차** ■■■■■■

■ 주제발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법률적 쟁점 검토 1

-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충청남도의회)

■ 지정토론

1.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효율적 정책 마련 25

- 유재영 수산자원과장(충청남도 해양수산국)

2.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효율적 정책 마련 29

- 김남용 수산과장(태안군 산업건설국)

3.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효율적 정책 마련 33

- 전중식 해양안전과장(태안해양경찰서)

4. 어촌계와 해루객의 상생 방안 마련 37

- 박기흥 수산지원팀장(수협중앙회)

5. 안전 체험 지역 및 종합 네트워크 센터 45

- 박현선 회장(충청남도민박협의회)

6.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조례 제정 필요성 49

- 최장열 어촌계장(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발 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법률적 쟁점 검토**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김 현 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법률적 쟁점 검토]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충남도의회)

I. 들어가며

해루질이란 밤에 얇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의미하는 충청도 및 전라도의 방언이다.¹⁾ 전형적인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유형이며, 이에 관하여 오랜 기간 어업인과 관광·레저업계의 의견충돌이 있어 왔다.

이러한 해루질에 관하여 작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존의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에 관하여 원칙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등의 어구 및 방법에 관하여 허용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었다.²⁾

1) 우리말샘, “해루질 : 명사 방언 밤에 얇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전라, 충남)”

2)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낚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2023. 3. 23.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허용되는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범위를 기존의 해양수산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에 맞추어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제7조의2에서는 기존의 어구·방법 뿐만 아니라 제2항에서 어구의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전기·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을 금지하고, 집어등(集魚燈)의 사용도 금지하였다.³⁾

여기에 더하여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낙시(대낙시 또는 손줄낙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수경

나. 숨대롱

다. 잠수복 및 잠수모

라. 오리발

마. 수중갈

바. 호루라기

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하였으며, 해양수산부령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별표1을 신설하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⁴⁾

허용되는 방법 및 수단만을 단순히 나열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18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제정·시행을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시·도의 조례 제정은 더딘 것이 현실이다. 왜냐면 어업인과 관광·숙박업계 및 비어업인인 채취자들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이며, 이의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관광업계의 입장에서는 비어업인의 관광 수요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4) 붙임 참조

5) “지자체 해루질 제한 조례제정 ‘늑장’”(어민신문, 4. 21.보도) 참조

II. 관련당사자의 기본권 및 권리

1. 어업인

어업인은 우선 어업권을 주장할 수 있다. 어업권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⁶⁾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⁷⁾ 해루질에 있어서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인 ‘마을어업’이 특히 문제가 된다.⁸⁾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⁹⁾ 물권을 준용한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상 전형적인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업권에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¹⁰⁾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업권은 재산권으로서 헌법적으로 보장받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 그러

6)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수산업법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8)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9) 수산업법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소재선·임종선, “漁業權의 物權的 效果와 特性에 관한 小考”, 토지공법연구 제54집(2011. 10.),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363면.

므로 어업권은 성문법률인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용되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를 감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해루질 행위자

해루질 행위자의 기본권으로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일반적 행동이 자유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자유와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¹¹⁾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이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¹²⁾ 그러므로 레저활동으로서의 해루질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 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해루질은 단순한 여가활동 내지는 일시적인 레저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¹³⁾

11)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고,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12)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

13)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아니한다. (중 략)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으나,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띌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9. 25. 2002헌마519)

3. 관광·숙박업자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포함한다.¹⁴⁾ 관광·숙박업자는 해루질이 제한되면 영업활동에 제약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4.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의 규범조화적 해결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이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른바 해루질 문제에 있어서는 해루질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관광·숙박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어업인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충돌의 해결에 있어 기본권의 서열이론에 따라 보다 우월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덜 중요한 이익을 유보시키는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에 따라 해결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다면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해결이 선호되고 있다. 규범조화적 해석이란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이익형량에 의해 어느 하나의 기본권만을 다른 기본권에 우선시키지 않고,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¹⁵⁾

14)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고(헌법재판소 1998. 3. 26. 97헌마194, 판례집 10-1, 302, 314), 법인도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2001헌마132)

15) 허영, 한국헌법론(전정 18판), 2022, 288면.

규범조화적 해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두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키되 두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과잉금지의 방법, 상충하는 기본권을 다치지 않는 일종의 대안을 찾아내서 기본권의 충돌관계를 해결하는 대안식 해결방법 등이 있다.¹⁶⁾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물권적 성격을 가진 어업권이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으며, 해루질도 방법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양측의 기본권을 모두 제한하는 과잉금지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조례를 통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규범조화적인 제도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6) 허영, 앞의 책, 289면.

Ⅲ. 비어업인 포획·채취 조례안의 제정 방향

1.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한계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와 한계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즉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 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¹⁷⁾

2. 비어업인 포획·채취에 있어서의 위임의 범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포획·채취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을 차용하면 ‘대통령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고

17)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대법원 2000. 11. 24. 2000추29)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도 어긋나면 안된다.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방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매우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¹⁸⁾ 굳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금지되는 어구 및 방법, 과태료 등 이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단순 반복에 불과하고 향후 법령이 개정될 경우 조례가 상위법령과 어긋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3. 시간 및 수량 제한

포획·채취의 방법이나 판매금지 등은 벌칙이나 과태료까지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에 담을 필요성은 낮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비어업인 포획·채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핵심은 시간 및 수량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포획·채취시간이나 포획·채취수량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비나 방법 뿐만 아니라 채취시간이나 채취수량도 분명히 포획·채취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나 수량을 정해서 충청남도 조례에 담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니면 적어도 주민이 예측가능하도록 대강의 사항이라도 규정해야 한다.¹⁹⁾²⁰⁾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18) 붙임 참조

19)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할 것이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우리 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법제처도 이미 태안군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태안군의 조례로 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²¹⁾ 그러므로 충청남도 조례에서는 ①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 ②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채취시간과 수량을 정하여야 한다.²²⁾ 하지만 위의 세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권한분배를 변경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근거를 요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시장이나 군수에게 시간이나 수량을 정하도록 위임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도

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2001헌라1)

20)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 15. 2013두14238)

21) “먼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포획·채취 기준은 해당 시·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제1호) 등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자원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포획·채취 제한 기준의 입법형식은 “시·도의 조례”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를 달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제처, 의견24-0039, 2024. 2. 23. 회신)

2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포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시·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2.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의 조례로 적정한 시간과 수량을 정하여야 하며 적어도 대강의 사항이라도 정해야 한다. 이 부분이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현재는 시간과 수량 제한이 없으므로 새로운 제한이 생긴다면 숙박·관광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IV. 해외사례

1.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미국은 주마다 수산물 채취나 낚시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다. 로드 아일랜드주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면 패류만 하더라도 굴(oyster), 다랑조개(soft-shell clam), 쇠고둥(whelk), 담치(blue mussel) 등 십수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각기 규정하고 있다. 굴을 예로 들자면, 최소 크기는 3인치, 채취 시기는 9월 15일부터 5월 15일, 조개류 관리구역(shellfish management area)에서는 채취 및 소지 금지 등 각종 제한을 하고 있다. 굴 채취수량에 있어서는 여가 목적인 로드 아일랜드 거주자(Recreational - Rhode Island resident)의 경우에는 1인당 하루 1/2부셸, 여가 목적의 라이선스를 소지한 비거주자(Recreational - Licensed non-resident)는 하루에 1인당 1팩(peck), 상업용(commercial)인 경우에는 1인당 3부셸 등 어패류 종류별로 상세한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다.²³⁾

23) 로드 아일랜드 주정부 홈페이지 참조. <https://dem.ri.gov/natural-resources-bureau/marine-fisheries/marine-fisheries-regulations>

4.10 Oyster(굴)

4.10.1 Minimum size(최소 크기)

A. Three inches (3") measured parallel to the long axis of the oyster.

4.10.2 Season(계절)

A. The seasons and areas open to harvest as specified in § 4.7.2 of this Part for bay quahog shall apply to oyster from September 15 through May 15; the taking of oyster in any waters of the state is prohibited from May 16 through September 14.

4.10.3 Area restrictions(금지지역)

A. Bissel Cove/Fox Island Shellfish Management Area: The taking, harvest or possession of oysters is prohibited until November 15, 2025.

B. Quonochontaug Pond: The taking, harvest or possession of oysters is prohibited until November 15, 2025.

C Providence/Seekonk Rivers Shellfish Management Area: The taking, harvest or possession of oysters is prohibited.

4.10.4 Possession limit(소지 한도)

A. Waters other than Shellfish Management Areas(조개류 관리 이외 지역)

1.Recreational - Rhode Island resident: One half (1/2) bushel per person per day.

2.Recreational - Licensed non-resident: One (1) peck per person per day.

3.Commercial: Three (3) bushels per person per day.

B. Shellfish Management Areas(조개류 관리 지역)

1. Recreational - Rhode Island resident: One (1) peck per person per day.

2. Recreational - Licensed non-resident: One half (1/2) peck per person per day.

3. Commercial: Three (3) bushels per person per day, except for the following:

a. Jacobs Point Shellfish Management Area: One (1) peck per person per day.

b. A maximum of two (2) commercial possession limits per vessel per day is authorized in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채취 시기와 크기, 비어업인 채취의 수량 등을 모두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의 현실에서 이러한 상세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2. 일 본

일본에서는 여가 또는 레저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유어(遊漁, 유교)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유어자(遊漁者, 유교샤)라고 한다.²⁴⁾ 일본의 「수산자원보호법(水産資源保護法)」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비어업인 포획·채취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어업법(漁業法) 제 170조 제1항에서 유어규칙(遊漁規則)의 근거를 담고 있을 뿐이다.²⁵⁾²⁶⁾ 그리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都道府縣)의 어업조정규칙(漁業調整規則)에서 어업인이 아닌 유어자(遊漁者)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²⁷⁾ 그리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그 내용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아오모리현의 아오모리현 어업조정규칙(青森縣漁業調整規則) 제44조에서는 유어자 등이 투망 등 사용할 수 있는 어구와 어법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다.²⁸⁾ 하지만 도

Shellfish Management Areas when two (2) licensed persons are on board the vessel.

4.10.5 Equipment restrictions(도구 제한)

A. No person shall dig and/or take any oysters from the waters of this State by dredge(s), rakes, or other apparatus operated by mechanical power or hauled by power boat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se Regulations.

24) 우리나라도 수산업법 제2조 제17조에서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5) 漁業法 第170条第1項 (遊漁規則) 内水面における第五種共同漁業の免許を受けた者は、当該漁場の区域においてその組合員(漁業協同組合連合会にあつては、その会員たる漁業協同組合の組合員)以外の者のする水産動植物の採捕(次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遊漁」という。)について制限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遊漁規則を定め、都道府県知事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26) 유어규칙은 유어를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자원보호법」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27)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단체장이 정하는 규범인 규칙을 구분한다.

28) 青森県漁業調整規則(遊漁者等の漁具漁法の制限) 第四十四条 何人も、海面において次に掲げる漁具又は漁法以外の漁具又は漁法により水産動植物を採捕してはならない。

- 一 さお釣り及び手釣り
- 二 たも網、さで網及び四つ手網
- 三 投網
- 四 やす(発射装置を有するものを除く。)及びは具
- 五 徒手採捕(潜水器により行うものを除く。)

2 前項の規定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쿄도 어업조정규칙(東京都漁業調整規則)은 푸른바다거북(あおうみがめ) 등 채취가 금지되는 해양생물의 종류도 명시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어구와 어법도 아오모리현과는 차이가 있다.²⁹⁾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보호법」과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와 방법에 비해서는 더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3. 독일

독일은 연방국가로 주마다 비어업인의 어로행위나 낚시 관련 규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낚시허가증(Angelschein)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는 2005년 어업법(Fischereigesetz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과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른바 임시낚시면허증(zeitlich befristete Fischereischein)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³⁰⁾ 이는 통상적으로 관광낚시허가증(Touristenfischereis

- 一 漁業者が漁業を営むために採捕する場合
- 二 漁業従事者が漁業者のために従事して採捕する場合
- 三 試験研究機関が試験研究のために採捕する場合

29) 東京都漁業調整規則(遊漁者等の漁具漁法の制限) 第四十条 何人も、次に掲げる漁具又は漁法以外の漁具又は漁法により水産動植物を採捕してはならない。

- 一 竿釣り及び手釣り(まき餌釣りを除く。)
- 二 たも網及びさ手網
- 三 投網(船を使用しないものに限る。)
- 四 やす及びは具(貝まきを除く。)
- 五 徒手採捕
- 六 ひき縄釣り

2 前項の規定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 一 漁業者が漁業を営む場合
- 二 漁業従事者が漁業者のために水産動植物の採捕に従事する場合
- 三 試験研究のために水産動植物を採捕する場合

3 第一項各号に掲げる漁具又は漁法により水産動植物を採捕する場合は、正当な漁業の操業を妨げ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令二規則一九一・追加)

(遊漁者等の水産動物の採捕の禁止)

第四十一条 何人も、次に掲げる水産動物を採捕してはならない。

- 一 あおうみがめ
- 二 造礁さんご類(小笠原村地先海面におけるものに限る。)

2 前項の規定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 一 法第五十七条第一項の許可を受けた者が、当該許可に基づいてかめ漁業又はさんご漁業を営む場合
- 二 試験研究のために採捕する場合

30)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der Fischereischein und Erhebung der Fischereiabgabe (3) Der zeitlich befristete Fischereischein wird ohne Fischereischeinprüfung für die Dauer von bis zu 28 aufeinander

chein)으로 불린다. 관광낚시허가증은 유료로 판매되며 28일동안 유효하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Urtauberfischerei-schein) 주에서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의 예를 따라서 휴가낚시허가증(Urtauberfischerei-schein)을 발급하게 되었으며, 튀링겐 주에서도 분기별낚시허가증(Vierteljahresfischerei-schein)이라는 명칭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에서 보듯이 독일에서는 일부 주에서 낚시 면허가 없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자격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지만, 레저를 위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문제 해결의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r folgenden Tagen auf Antrag bei erstmaliger Erteilung im laufenden Kalenderjahr nach dem Muster gemäß der Anlage 2 zu dieser Verordnung, (후략)

V. 결 어

『수산자원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비어업인 포획·채취의 방법과 범위가 과거에 비해 구체화되었다. 또한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어업인들의 어업권과 숙박·관광업자, 채취자 등의 기본권을 규범조화적으로 제도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충청남도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핵심은 포획·채취의 시간과 수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의 경우 계절별로 일정시간대를 차별화할 수도 있고 시간의 길이(예를 들어 1일 3시간 등)를 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수량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중량을 정할 수도 있으며 해외 사례와 같이 어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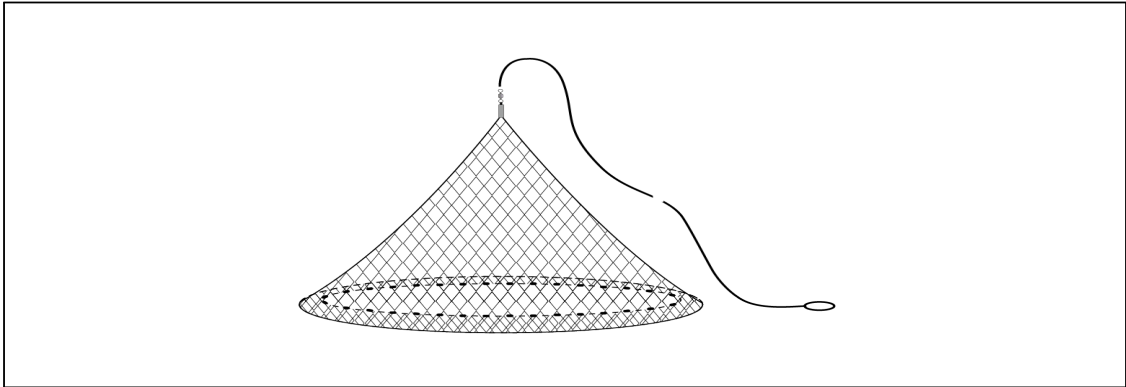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시간과 수량을 정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들간에 많은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에서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세가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붙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

1. 투망(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

가. 투망의 형태: 원뿔형태의 그물로서 윗부분에는 기다란 손잡이줄이 있고,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는 형태이며, 투망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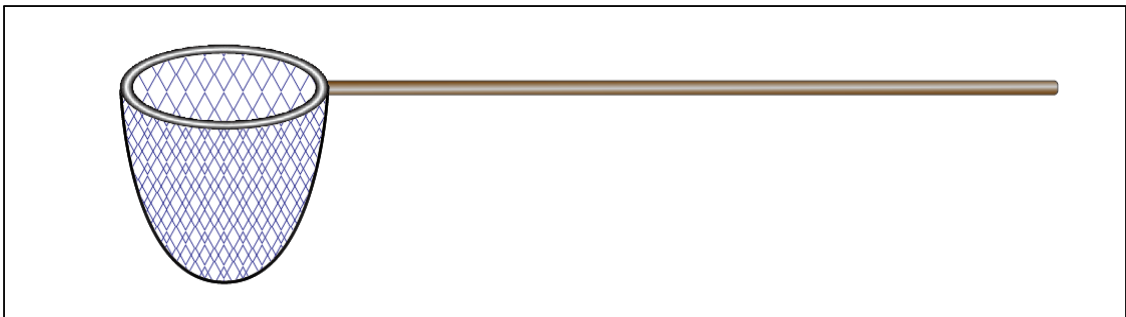


나. 사용방법: 그물이 넓게 펴지도록 물에 던진 다음 손잡이줄을 서서히 당겨 추가 바닥에 닿은 채로 그물이 오므라들도록 하여 그물에 갇힌 대상물을 잡는다. 이 경우 그물의 아래 둘레는 25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

가. 뜰채(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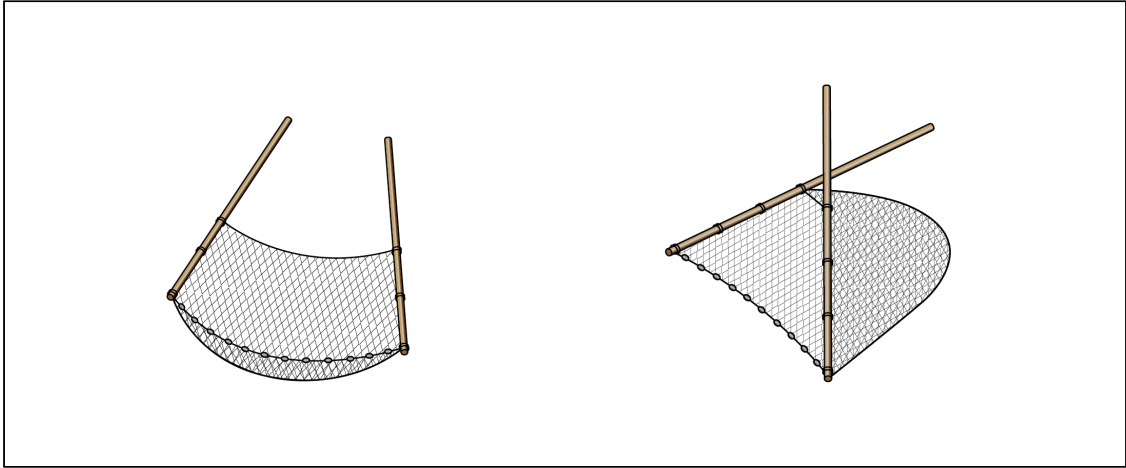
1) 뜰채(쪽지)의 형태: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대나무나 철사 등으로 테를 두르고, 테에 한 개의 막대로 된 손잡이가 붙어 있는 형태이며, 뜰채(쪽지)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2) 사용방법: 손잡이를 잡고 조작하여 대상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다. 이 경우 테의 가장 긴 변의 길이(테가 원형인 경우에는 그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는 1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반두(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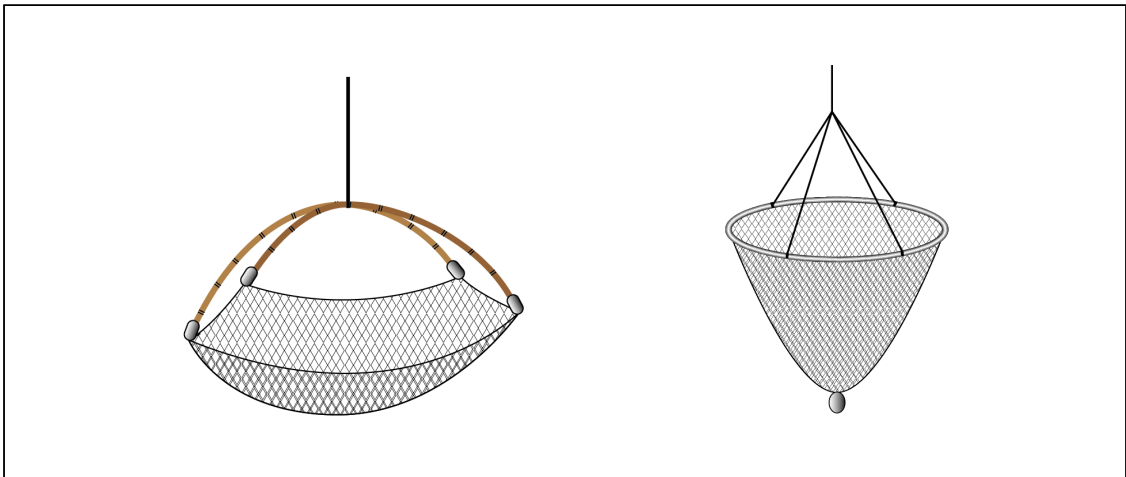
- 1) 반두(쪽대)의 형태: 사각형태 그물의 아랫 부분에는 추가 달려 있고, 양쪽 가장자리에 막대로 손잡이를 붙여 만든 형태이며, 반두(쪽대)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 2) 사용방법: 손잡이를 잡고 그물을 펼친 후 대상물이 펼쳐진 그물 위로 가도록 하여 재빨리 들어 올려서 잡는다. 이 경우 그물의 가장 긴 변이 2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손들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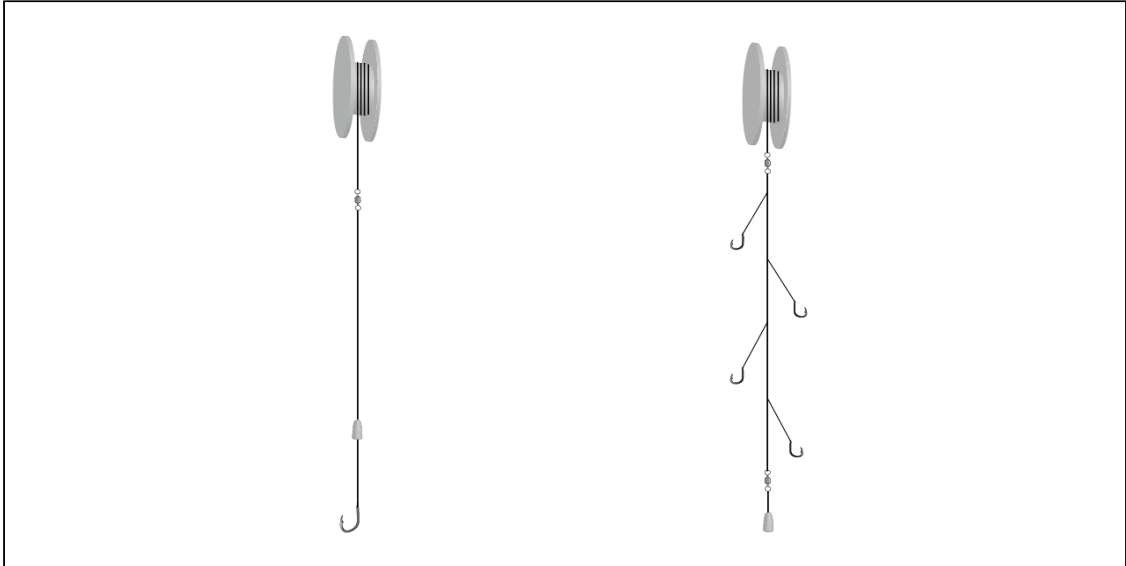
- 1) 손들망의 형태: 일정한 모양의 틀이나 테의 아래쪽에는 자루 모양의 그물을 달고, 위쪽에는 목줄과 돌움줄(당김줄)을 단 형태로, 손들망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 2) 사용방법: 손들망을 물속에 넣어 두었다가 대상물이 그물 위에 오면 돌움줄을 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그물에 갇힌 대상물을 잡는다. 이 경우 그물의 가장 긴 변이 2미터 (틀이나 테가 원형인 경우에는 그 지름이 2미터를 말한다)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외줄낙시(대낙시 또는 손줄낙시)[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다목]

가. 외줄낙시의 형태: 낙시줄 한 가닥에 낙시바늘 1개 또는 여러 개의 낙시바늘을 단 형태로 대나무 등 긴 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외줄낙시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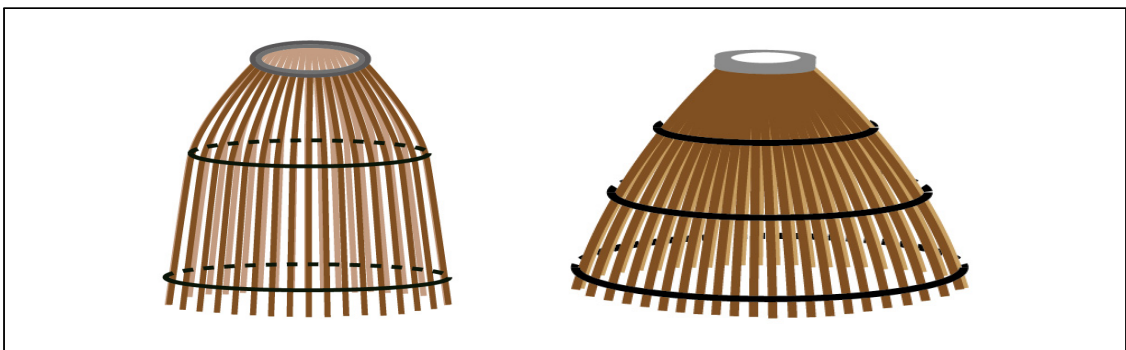


나. 사용방법: 낙시바늘에 미끼를 끼우거나 끼우지 않고 물속에 넣어 낙시바늘에 대상물이 걸리면 낙시줄을 감아올려 그 대상물을 잡는다. 이 경우 낙시줄과 낙시바늘 등 낙시도구와 미끼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적용한다.

4. 가리, 통발(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

가. 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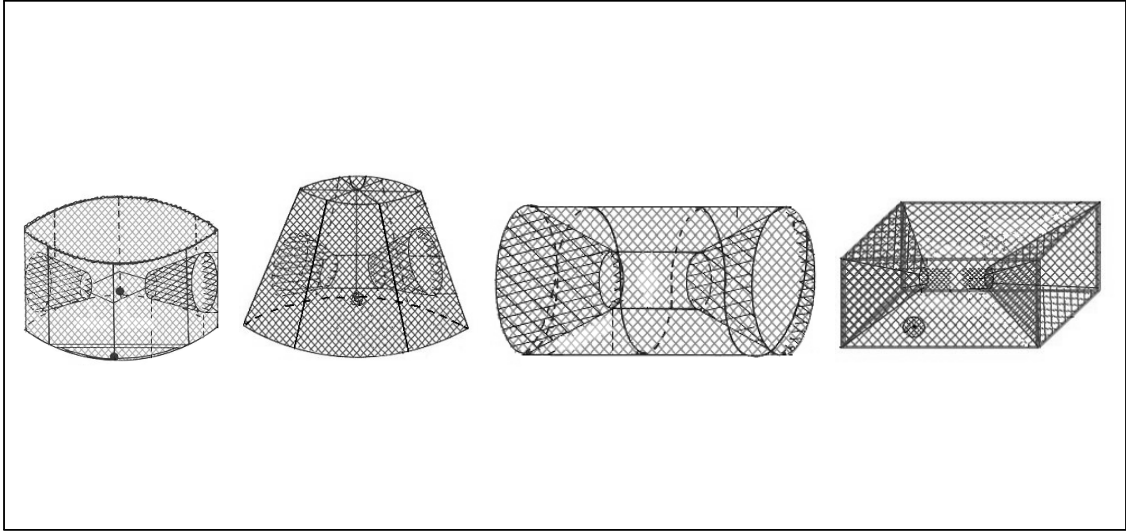
1) 가리의 형태: 대나무와 같은 재료를 엮어서 밑과 위가 뚫린 원뿔대 모양으로 만든 형태로, 가리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2) 사용방법: 주로 얇은 물에서 대상물 위에서 덮어씌워 대상물을 가둔 후, 위쪽에 있는 구멍으로 손을 넣어 대상물을 잡는다. 이 경우 가리의 가로·세로·높이의 길이(원통형인 경우는 지름을 말한다)는 각각 80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통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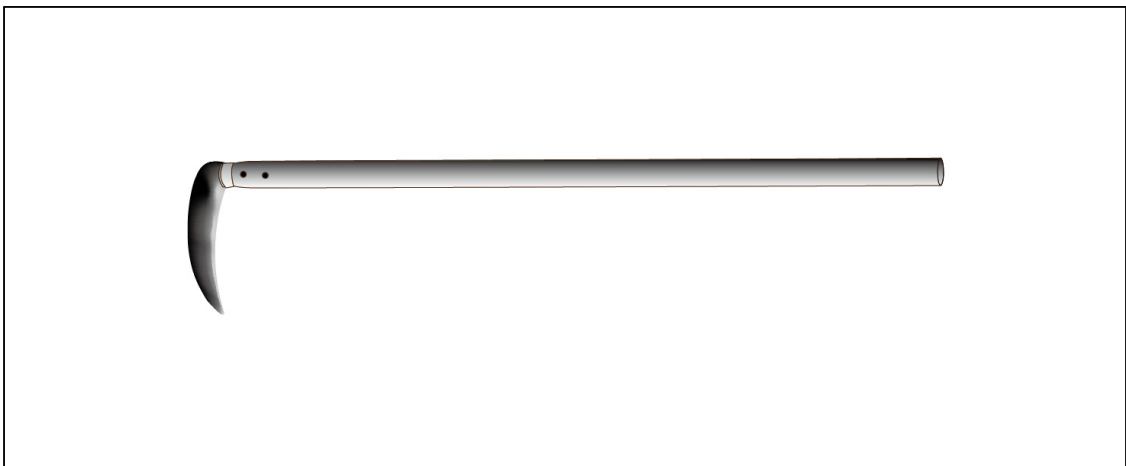
- 1) 통발의 형태: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형태로, 통발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 2) 사용방법: 통발에 긴 줄을 달아 물속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들어 올려 통발 속에 들어간 대상물을 잡는다. 이 경우 통발의 가로·세로·높이의 길이(원통형인 경우 지름을 말한다)는 각각 80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통발의 개수는 1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낫대(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마목)

- 가. 낫대의 형태: 낫에 대나무 등 장대를 연결한 형태로, 낫대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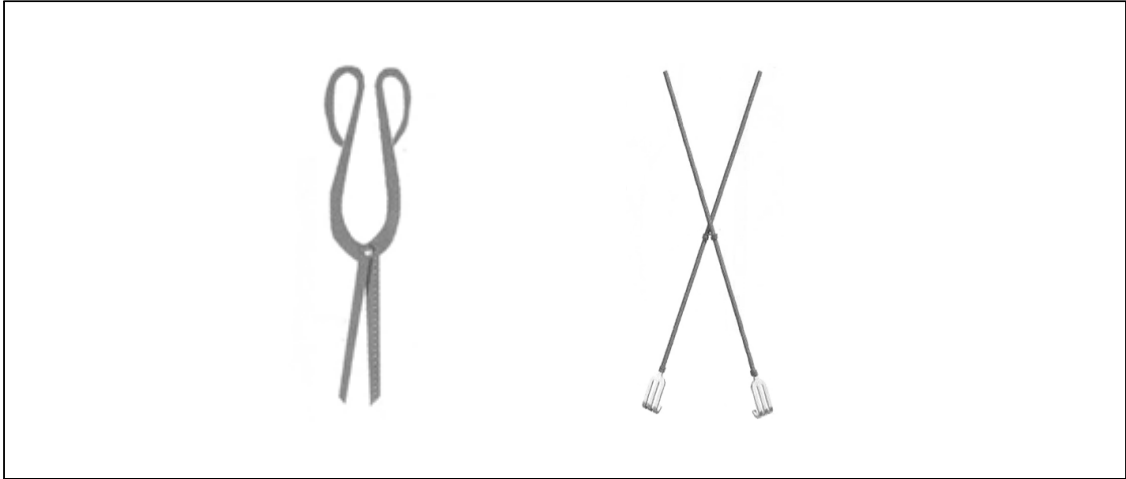


- 나. 사용방법: 비료용 해조를 채취하기 위해 장대 끝에 달린 낫으로 해조를 자른 후에 가까이 끌어당겨서 채취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삽(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바목)

가. 집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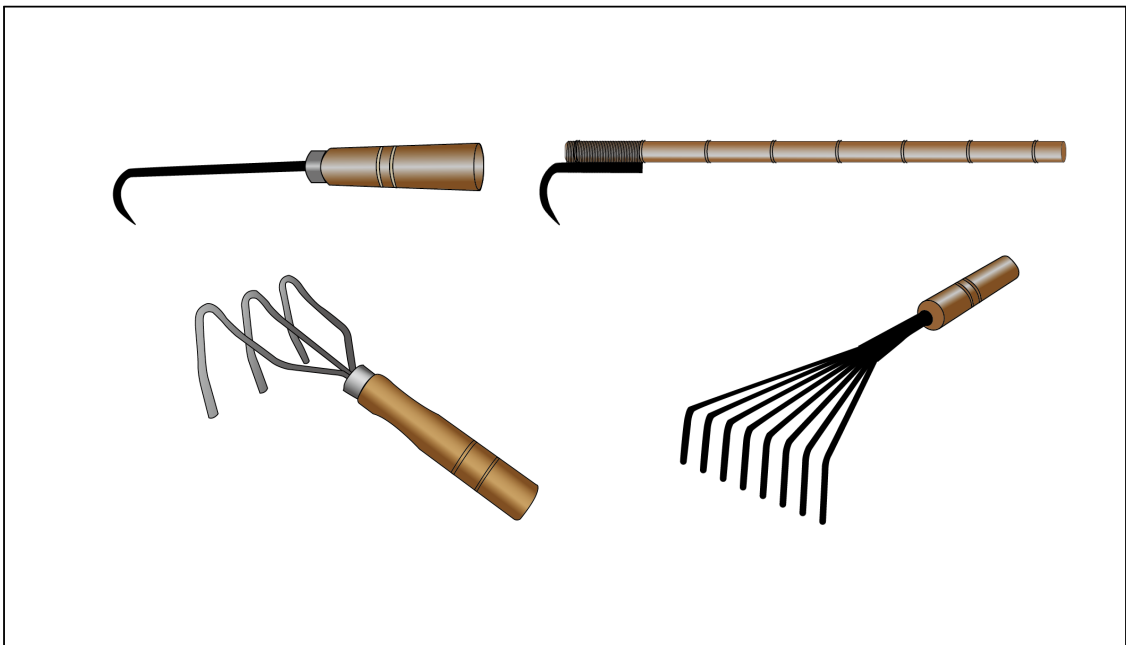
- 1) 집게의 형태: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그 끝으로 대상물을 집을 수 있는 형태로, 집게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 2) 사용방법: 대상물을 갈래 사이로 넣고 갈래 끝을 서로 맞닿도록 조작하여 대상물을 집어서 잡는다.

나. 갈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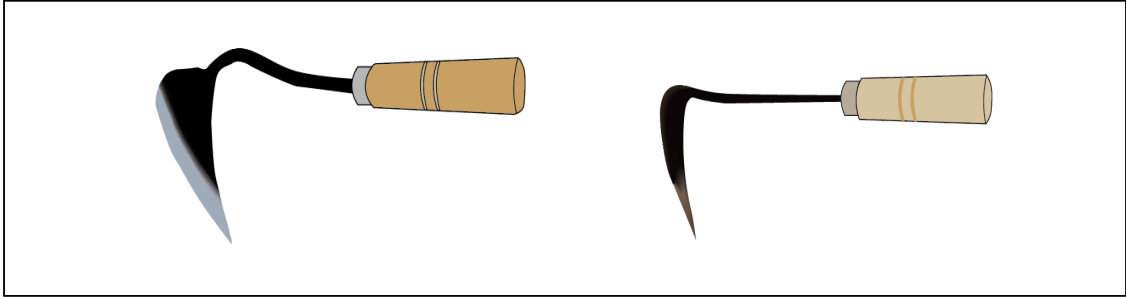
- 1) 갈고리의 형태: 쇠를 구부려서 앞쪽 끝은 뾰족하게 만들고, 뒤 끝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뾰족한 앞쪽 끝이 1개인 외갈고리 외에 앞쪽 끝이 여러 개인 갈고리들도 포함하며, 갈고리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 2) 사용방법: 주로 대상물의 몸체를 훑어 잡거나 그 주변을 파내어 잡는다.

다. 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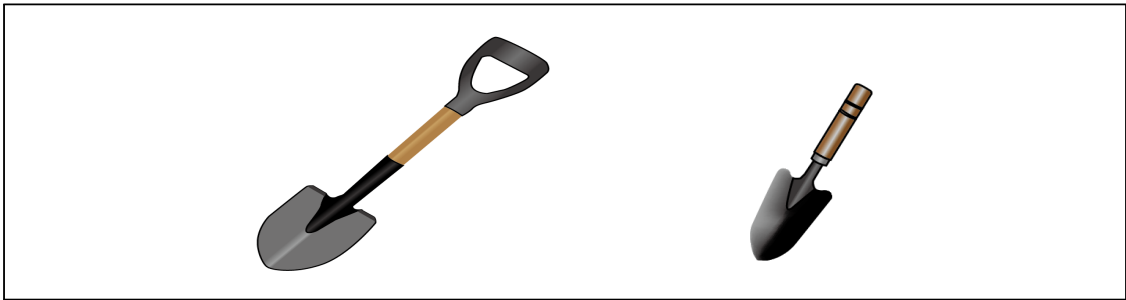
- 1) 호미의 형태: 끝은 뾰족하고 위는 넓직한 삼각형의 쇠판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호미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 2) 사용방법: 뾰족한 끝으로 대상물의 주변을 파내거나 대상물을 캐내어 잡는다.

라. 삽

- 1) 삽의 형태: 삼각형 등의 얇은 판(板)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삽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



- 2) 사용방법: 대상물 또는 그 주변의 흙 등을 파거나 떠서 대상물을 잡는다.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효율적 정책 마련**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과장 유재영**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효율적 정책 마련]

유재영 과장(충청남도 수산자원과)

MEMO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효율적 정책 마련**

**태안군 수산과
과장 김 남 용**

MEMO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효율적 정책 마련**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과장 전 중 식**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효율적 정책 마련]

전중식 과장(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

MEMO



어촌계와 해루객의 상생방안 마련

수협중앙회
수산지원팀장 박 기 흥

[어촌계와 해루객의 상생 방안 마련]

박기홍 수산지원팀장(수협중앙회)

1. 문제의 제기

- “선(線)”은 물체와 물체를 경계 짓는 부분이라는 물리적 의미도 있으나, 다른 것과 구별되는 일정한 한계나 그 한계를 나타내는 기준의 심리적 정도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 2017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후 수중레저 활동을 즐기는 레저객들이 증가하면서, 바다는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유재라며 어업인들이 수십년 동안 관리해온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선”을 넘고 있습니다.
- 물론 바다가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公共財)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어장에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자본과 노력을 투여하여 생업으로 삼아온 어업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최근 해양레저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해루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체험 어장이 아닌 마을어장과 양식장까지 침범하여 갯 살포한 치패부터 산란기에 접어든 종패까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해 해양생태계와 어업인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 얇은 바다에서 취미나 오락으로 시작된 해루질은 잠수용 슈트, 서치라이트 등 전문장비를 착용하고, 동호회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점점 전문화·상업화되고 있습니다.
- 특히, 공기통 없이 슈트, 오리발 등 잠수용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스낵해루질은 야간에 양식장이나 마을어장을 자유

로이 드러나들면서 어업인이 관리·조성한 문어, 전복, 해삼 등 수산자원을 대량 포획·채취하여 어업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해루질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 사항을 짚어보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언급코자 합니다.

2. 쟁점 사항

□ 마을어업권은 해당 어촌계의 배타적·독점적 권리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재산권입니다.

- 우리 어촌사회에서는 지선어장에 대하여 수산업법상의 어업 제도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우리 바다, 우리 어장이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지배해 왔습니다. 외지인이나 인접 지역 사람들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 사람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 마을어업권은 이러한 종래 지선마을의 지선어장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이용관계를 권리화한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16조에서는 어업권을 물권으로 규정하고,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사유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물권으로서 채권과 달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마을어업권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마을어업권, 양식업권은 다른 사람과 경쟁적 조업이 가능한 허가나 신고어업이 아니라 면허어업이라는 것입니다. 면허어업은 어업의 특성상 수면의 배타적·독점적 이용이 허용되어야 성립하는 어업입니다.
- 둘째, 바다는 공유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입니다. 공유재는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를 받으며, 국가기관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셋째, 마을어업권, 양식업권은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이나 절도죄 등 형사적 방법으로는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합니다. 침해행위는 예측할 수 없는 불시에 이루어지고 무주물인 수산동식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따라서, 마을어업권은 마을어장 내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완전한 재산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국가는 보호조치를 해야합니다.

□ 무분별하게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 단속 근거 마련
필요합니다.

- 비어업인의 연안에서의 야간 해루질은 어업인들이 다음날 출어를 위해 수면을 취해야 하는 당일 오후 8시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성행하여 해경이 이를 실제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단속을나와도 포획채취한 수산물이나 사용하던 불법 도구들을 버리고 나오기 때문에 실효적인 단속이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어업인들은 불침번을 서며 바다를 지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되어 다음날 조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상악화 시 행해지는 해루질로 인해 수상안전 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갯벌 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대상 해루질은 단순히 얕은 바다에서 취미·오락으로 하는 전통적 해루질이 아닙니다. 전문화·상업화로 변질된 해루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계속·반복적으로 해루질을 통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의사로서 고가의 전문장비를 구입하고 전문교육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장기간 해루질을 영위해 온 숙련된 자들입니다.

- 이처럼 해루질은 명백한 불법 어업임에도 단속기관에서는 레저행위로 판단하여 용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 어업인 피해가 누적되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호응하여 비어업인의 해루질에 대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23.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3.12월 시행되었으며 동법 시행령도 '23.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비어업인 해루질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 그동안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되었던 해루질 기준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비어업인의 채취에 대한 어구와 장비에 관련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포획·채취 시간, 수량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에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과 마찰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령은 지자체 조례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어구, 시기, 지역, 수량 등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제한 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비어업인들의 해루질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3. 조례 제정 필요성

- 우리 어업인이 당면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루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지자체 조례제정입니다. 저희 수협이 만든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은 채취수량 및 시간 제한, 수중레저장비를 활용한 채취 금지 등 우리 어업인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터전인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바

탕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 특히 중요한 내용은 해루객의 안전을 위한 포획·채취시간 제한과 수산자원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어종에 대한 포획채취 수량 제한입니다. 참고로 거제시는 마을어장 내 나잠어업인들의 야간조업 행위를 제한(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제한)함으로써 나잠어업 신고를 통한 해루질 행위까지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 지난 4월 강원도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정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4. 어촌계와 해루객의 상생방안 마련

- 레저활동의 증가로 바다와 어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편승하여 각 방송사에서도 어촌과 섬 생활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우후죽순처럼 방영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 어촌은 수산자원고갈과 어획량 감소,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어업인들의 해루질과 낚시 행위로 인해 어업인과 경쟁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어업인들은 우리 어촌의 존속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그들이 지켜야 할 “선”을 준수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 수중레저법의 고유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 바다는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유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에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 자본과 노력을 투여하여 생업으로 삼아온 어업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해루객에게는 레저활동에 따른 행복추구권을 주장하기 전에 어업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입니다.

- 물론 일부 해루객의 그릇된 행위로 전체 해루객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루질이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국민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루질 동호회나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시간, 물량, 사용 장비 제한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어촌계와 협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체험 지역 및
종합 네트워크 센터**

**충청남도민박협의회
회장 박 현 선**

[안전 체험 지역 및 종합 네트워크 센터]

박현선 회장(충청남도민박협의회)

□ 사계절 명품 관광지 태안군

- 태안은 27개의 해수욕장을 비롯해 수목원
- 꽃축제 해안사구 박물관 천수만 갯벌등
- 다양한 관광지와 각 마을별 바다체험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태안군 인구 : 6만여 명

□ 안면도 인구 : 1만 2천여 명

□ 태안군을 찾은 연 관광객수 : 1,800만여 명

□ 태안군 숙박객수 : 500만여 명

□ 안면도 관광객수 : 700만여 명

□ 당면과제(문제점)

- ※ 관광지도 참조

□ 해결책

- ※ 현장설명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조례 제정 필요성**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어촌계장 최 장 열**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조례 제정 필요성]

최장열 어촌계장(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안군 소원면에서 파도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최장열입니다.

먼저 본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충청남도과 정광섭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비어업인들의 양식장 및 마을어장 내 양식물 무단 채취로 엄청난 갈등을
경험한 저로서는 이번 토론회가 어업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의견이 많이 개선되어 관련
조례에 반드시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먼저 우리 파도어촌계를 중심으로 비어업인들의 무단 수산물 채취가
어업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도어촌계는 어촌계원이 약 240명이고 면허지는 약 30건에
335ha를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어촌계입니다.

또한, 양식장 종류가 수산업법에 나온 거의 모든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어
비어업인들과 마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어업인들과 마찰이 있는 사례로 첫째 바지락 등 폐류양식장입니다.
6건에 175ha로 우리 어촌계 업무구역 내 갯벌은 대부분 양식장이지만,
사리때 간조시 소라, 낙지를 잡는다는 핑계로 특히, 야간에 양식장을

랜턴, 족대, 또는 잠수복, 갈고리 등 장비를 휴대하고 양식장 내로 들어가 수산물을 절도해 가는 행위입니다.

이때 비어업인들은 바지락 양식장에 양식물이 아닌 낙지를 잡으러 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바지락까지 훔쳐가기 때문에 출입 자체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현장에서 엄청난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싸움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충돌로 인해 경찰 출동은 기본이고 폭행으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는 일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작년에 야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지락 양식장과 해삼양식장에 몰래 해루질을 갔던 비어업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사망사고는 저희 어촌계에서만 일 년에 매년 1~3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갯벌은 다양한 갯골이 형성되어 있어서 현지 주민들도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야간에는 아예 접근을 자제하는데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는 비어업인들이 해루질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 즉 국가가 살인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비어업인들에게 해루질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중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경, 119구 소방대, 군청, 어민들까지 행불자를 찾기 위하여 밤, 낮으로 특히 어민들은 지형과 조류의 흐름을 잘 안다는 이유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행불자와 연관도 없지만 행불자를 찾을 때까지 많은 어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동원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지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루질로 인한 자살 또는 목시적 살인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복, 해삼양식장의 다툼입니다.

우리 어촌계 업무구역 내 연안을 따라 전복, 해삼양식장 8건에 50ha를 소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연안은 전복, 해삼양식장으로 개발되어 있고 비어업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공유수면은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복, 해삼양식장 경계에서 스킨스쿠버 또는 맨손으로 전복, 해삼 등을 양식장에서 채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복, 해삼 절도로 신고하면 양식장 특성상 경계표시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경계표시를 하지 않아 양식장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양식장 전복, 해삼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체험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불법 채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녀를 통해 채취 작업을 하여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전복, 해삼 양식장을 소유한 어촌계는 야간에 바닷가에 불빛만 보여도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복, 해삼은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임에 따라 수확시기 고육지책으로 생업에 지쳐 쉬어야할 야간에 순찰조를 만들어 순찰을 돌고 있지만, 넓은 바닷가와 대부분 어민들의 고령으로 인하여 해삼, 전복

양식장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야간 순찰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어촌계도 많기 때문에 이중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선박을 이용한 절도 행위입니다.

야간을 이용하여 선박을 통해 전복, 해삼양식장에 접근하여 산소통을 맨 다이버를 몰래 내려놓고 선박은 철수한 다음 다이버가 작업이 종료되면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전복, 해삼을 무작위로 채취해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이버들이 무용담처럼 어느 특정 양식장에서 하루 저녁에 해삼 몇 톤을 잡아 얼마를 벌었다고 자랑질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알려진 사실들이라 팩트입니다.

혹시 바다에서 공짜로 생기는 것을 못잡게 한다고 오해하셨다면 오해를 풀어 주기기 바랍니다.

요즘 거의 모든 양식장에 어촌계 기금으로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에 종패를 넣고 서식장을 조성하고 가꾸고, 지키고, 키우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양식물도 논밭에서 기르는 농작물과 똑같이 어업인들이 피땀으로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도 지켜보지 않은 야간이라는 이유로 경계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어업인들의 피와 땀으로 생산한 양식제품을 대규모로 씨를 말릴 정도로 절도해 가는 행위는 반드시 법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해루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참석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및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점점 양식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식장의 생산량도 예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최소한 대한민국의 식탁에서 수입 수산물이 점령하는 사태는 막아보자고 날마다 고민하고 열정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들어온 것을 왜 자기들거라고 우기는 거야, 바다가 다 자기들 거야 등의 야유를 하면서 내가 해삼 및 수산물 몇마리 잡아가는 해루질이 뭐가 문제야 하는 인식으로 해루질의 자유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전체는 모르겠지만 캠핑장이 발달한 파도어촌계에 사리때 약 이백여명 이상이 해루질을 한다고 판단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이백 명이 해삼 10마리만 잡는다고 가정하고 주말만 계산해서 한 달이 4주니까 8일, 12달이면 96일, 96일에 10마리 960마리, 960마리를 200명이 잡으면 192,000마리이며, 무게는 마리당 100g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20톤의 해삼이 우리 파도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약 20톤이면 현재 시세로 약 4~5억 원입니다. 어민들의 소중한 어촌계 재산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도 문제지만 192,000마리의 해삼이 대부분 커보지도 못한 종패가 사라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바다의 황폐화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비어업인 여러분, 한 개의 어촌계에서 연간 4~5억 원의 소득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어느 개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년에 배추밭 수만 평이 체험이라는 핑계로 사라졌다면 언론에서 대서특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언론, 정부가 책임을 방치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취미이지만, 누군가는 생계이며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참석해 주신 입법 관계자님들에게 촉구합니다.

바다의 자원은 정확한 수치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해루질을 방치한다면 어업인은 물론 비어업인들도 식탁에서 국내산 수산물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현재의 양식장이 원래의 모습이라고 많은 비어업인분들은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옥하고 깨끗하게 만든 것은 못 먹고 못살던 저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국가에 보조금 한 푼 없이 오로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고무신을 신고 아니면 맨발로 갯벌에 있는 돌, 구적 등을 등짐과 바지개로 육지로 몇

년간을 나르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등과 손, 발에 피 흘리던 모습을 저는 보았고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왜 어촌으로 내려와서 살지 못할까요? 어촌은 그냥 힐링에 대상, 동경의 대상, 레저를 즐기는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동과 적은 보상 그리고 부족한 사회 기반시설 등 그러나 누군가는 어촌을 지켜야 우리 대한민국이 평형을 맞추며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서 모두 일등이 될 수 없듯이 명칭해 보이지만 묵묵한 꼴등도 있어야 일등도 있고 일등이 더욱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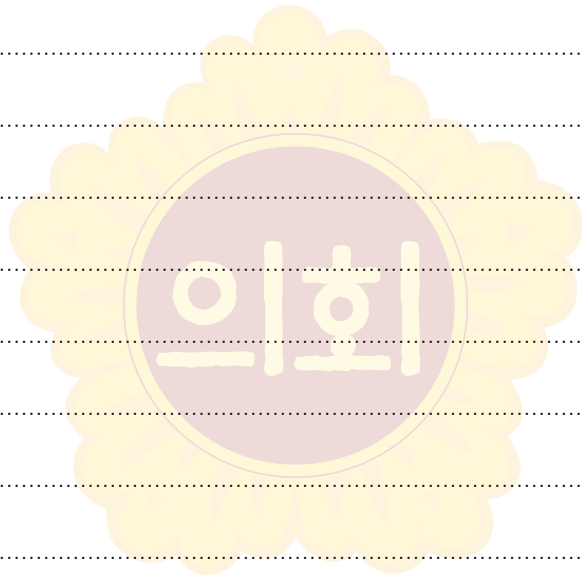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야간 해루질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생업과 레저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며, 생명 존중을 위해서,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서, 모두 잘살기 위해서 야간 해루질은 반드시 막아 주십시오.

또한, 하루가 급합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한 당사자로서 야간 해루질을 막을 때까지 끝까지 어업인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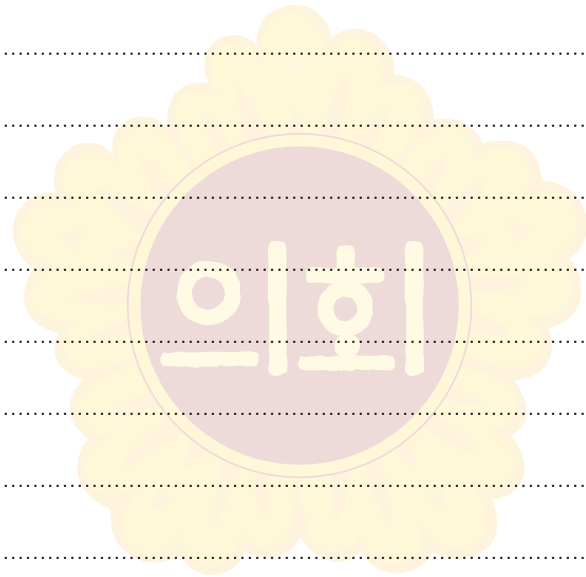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MO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